

수수료(제51조제1항 관련)

1. 공통기준

가. 수수료는 신청비, 출장비, 심사·관리비를 포함하며, 신청인이 부담한다.

나. 출장비

- 1) 공무원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,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.
- 2)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.

다. 심사·관리비

- 1)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심사보고서 작성,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2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)에 따른 심사·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·징수하고, 인증기관에 권장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의 사항: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·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,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납부 대상	신청비	출장비	심사·관리비
가.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	5만원	공통기준 적용	공통기준 적용
나.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	2만원	공통기준 적용 (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)	공통기준 적용 (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)
다.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	5만원	공통기준 적용	공통기준 적용
라. 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	5만원	공통기준 적용	공통기준 적용
마. 법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인증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	10만원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	공통기준 적용	없음

3. 납부방법 등

가.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.

나.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·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.

다. 인증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, 지정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.

라. 수수료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, 납부받은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.